

# 장애인스포츠 권익보호 인권친화적 지도매뉴얼



# 인권친화적 지도자란?

01

## 인권친화적 지도자란?

- 항상 선수의 입장을 생각, 선수의 의견에 귀 기울입니다.
- 선수와 마음으로 공감하며, 체계적인 선수관리 및 지도를 위해 항상 기록하고 실천하도록 합니다.  
→ 선수와 1:1 상담 및 정기적(지속적) 상담을 실시합니다.

02

## 인권친화적 지도자 역할

- 팀 분위기에 대한 민감성, 구성원 간 관계, 갈등상황을 파악합니다.
- 선수의 인권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. (예: 주기적인 인권교육, 성폭력예방교육 등)
- 훈련, 경기 등 운동부 생활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갖습니다.

03

## 인권친화적 역량강화

-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선수 인권침해 하지 않도록 살펴봅니다.
- 항상 선수가 닮고 싶은 귀감이 되도록 노력합니다.
- 해당 종목 지도자로서 전문성 구축 및 지도자 리더십을 갖추도록 합니다.
- 선수의 특이사항 및 훈련 중, 경기 중 발생상황에 대한 정보를 관리합니다.



# 스포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의 예

| 상황 1 |



·훈련태도, 성적 불량, 경기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**체벌과 폭력** (욕, 장애 비하 발언 포함)

·말이나 행동으로 **상대방을 위협**,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선수를 고립시키는 행위

| 상황 2 |



·개인의 장애유형,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, 과도한 훈련을 억지로 강요하는 행위

·다른 사람들 앞에서 **모멸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**

| 상황 3 |



·사전 계획이나 서로 합의 없이 (**지도자 임의대로**) 자유시간, 귀가시간을 **마음대로 바꾸거나 조정하는 행위**

# 장애 유형별 선수들에게 이렇게 대응하세요!

## 시각장애인

의 경우, 알고 지내는 경우 **만났을 때 반드시 소리 내어 인사**  
 출입할 때 인가척을 하고, 누구인지 말해주며, 자리를 뜰 때도 알려 주어야 함  
**반드시 도움 요청 사항 확인 및 사전 동의** 후 도움을 주는 사람(본인)의 오른쪽 팔꿈치를 잡게 해야 함

## 지적장애인

의 경우, 인지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**반말하기, 함부로 대하거나 심부름**을 시키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음.  
 야단치거나 무시하는 말, 행동보다 상대방에 대한 인내와 관용으로 **기다리면서 잘못을 지적하여 수정**

## 지체장애인

의 경우,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허락없이 휠체어에 앉거나 개인의 보장구를 만지지 않도록 함  
 (착용한 보조 기구는 신체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다루어야 함)  
 도움을 주고자 할 때 **허락**이나 **동의**를 얻고, **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만 도움** 제공 (과도한 친절 지양)

## 청각장애인

의 경우,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**욕설, 비난** 등의 **언어폭력** 발생  
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려주지 않아 소외감 경험, 정서적인 고립, 위축감 등  
**정서적 폭력** 발생 (간단한 수어를 통해 자기 개방화, 서로 의사소통가능)

# 상황별 성폭력을 예방하려면?

훈련장, 경기장	그밖에 상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굴욕감 및 수치심을 주는 행위 금지 -예: 장애비하 발언을 하며 희를 내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다른 사람에게 외모에 대한 비하, 성적인 표현, 모욕적인 언행 금지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훈련 중 마사지 또는 기술지도를 위해 신체접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동의 얻기 또는 사전에 고지한 이후 지도 -예: 동의 사전 고지 없이 선수에게 기술지도 (신체 접촉 필요한 경우) 특별주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화식자리에서 술 마시는 것을 강요</li> <li>· 상급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경우</li> <li>· 억지로 함께 춤을 추도록 강요하는 경우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나치게 과한 친밀감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 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비공식적인 (사적인) 만남 금지</li> <li>· 모든 선수가 함께 있는 (공식적인) 자리에서 공지사항 및 내용 전달</li> </ul>

# 상황별 성폭력 예방법

## 01 젠더(Gender) 감수성 향상

- 동의하지 않은 (혹은 사전 고지 없는) 성적 접촉은 범죄임을 인식
- 성별, 장애유형, 종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
-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 (예 : 성격, 취향, 가치관 등)
- 인권친화적 지도자의 역할 숙지, 젠더 감수성 교육 수강

## 02 자기표현과 소통 훈련

- 침묵은 침묵이다. (동의의미 아님). NO는 NO로 수용
- 선배 (동료) 선수, 상사에게 NO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
- 평소 자연스럽게 자기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, 기회 제공

## 03 신뢰관계 구축과 교육

- 상대방 (선수, 지도자)의 사적인 영역 존중
- 성폭력 예방 교육, 인권 교육에 적극적 참여 (대상자별, 연 1회 이상)
- 편안한 스포츠 훈련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자 역할 생각해보기

# 선수 폭력 및 성폭력 발생 시 대응법



# 선수 폭력 및 성폭력 발생 시 대응법

01

· 폭력, 성폭력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, 어떠한 경우라도 묵인하거나, 간과, 회피 금지 즉각적인 대응  
-예: 당사자 중재 금지, 해당 단체 보고, 관련기관 자문

02

· 폭력 및 성폭력 피해선수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즉각적으로 (피해자 분리 등) 안전조치 실시  
-예: 훈련장소, 훈련시간 등 지도자 재량으로 당사자 공간 분리

03

· 상황이 심각할 경우, **응급진료정보센터(119, 1339)** 에 연락하여  
지도자는 반드시 병원 이송 차량에 동승한 후 피해선수의 상태를 설명

04

· 안전조치 후 관련 선수의 보호자, 그리고 해당 (연맹, 시도) 소속의 기관장에게 **즉시 연락하여 알리고**  
(관련법 참조: 공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'신고의 의무' 부과)

05

· 피해 선수가 인정을 찾은 후, 피해선수와 가해선수와 분리하여 개별 상담 실시, 상담내용기록 (육하원칙)  
심각한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, (성폭력 신고 및 지원전문기관에 자문, 협조요청)